## 2021년 한눈에 보이는

# 몽골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 CONTENTS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1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4
3.	비관세장벽 현황	16
4.	수출 애로사항	23
5	현지한 자무보고서	25

## 몽골 (MONGOLIA)

##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 (1) 시장개요

## □ 시장규모

- 2020년 몽골 식품시장 규모는 33억 600만 달러(한화 약 3조 7,725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8,828억 원)로 전체의 49.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 육류 시장이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9.6%), 낙농품(7.4%), 과일 및 견과류(6.8%)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6억 5.600만 달러(한화 약 1조 8.897억 원)로 전체의 50.1%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3% 증가함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0%), 편의식품(6.3%), 영유아용 식품(4.7%), 소스 및 향신료(2.4%) 순

### < 식품 시장 규모 (2016~2020)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대기 증감률
전체	2,385	2,375	2,762	2,913	3,306	100.0	13.5
신선식품	1,203	1,196	1,390	1,464	1,650	49.9	12.7
- 육류	582	579	672	708	806	24.4	13.8
- 채소류	229	228	266	280	319	9.6	13.9
- 낙농품	177	176	204	215	243	7.4	13.0
- 과일 및 견과류	173	172	200	211	225	6.8	6.6
- 유지류	42	41	48	50	57	1.7	14.0
가공식품	1,182	1,179	1,372	1,449	1,656	50.1	14.3
- 스낵류	519	517	601	634	733	22.2	15.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97	295	343	361	431	13.0	19.4
- 편의식품	150	149	172	180	207	6.3	15.0
- 영유아용 식품	119	121	144	156	157	4.7	0.6
- 소스 및 향신료	61	61	70	74	79	2.4	6.8
- 스프레드 및 당류	36	36	42	44	49	1.5	11.4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인구 수는 335만 7,542명, 중위연령 28.2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5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88.3%로 평균 인구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함
    - (\*) 10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23.0%, 30세-39세 인구는 17.0%, 10세-19세 인구 15.5%, 20세-29세 인구 14.9% 비중을 각각 차지함
  -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비교적 균등한 편으로, 남성 164만 8,979명(49.1%), 여성 170만 8,563명(50.9%)으로 집계
- 2020년 1인당 GNI는 3,688달러(한화 약 421만 원)를 기록하여 작년 1인당 GNI 3,798달러(한화 약 433만 원)보다 감소하였음
  - 몽골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의 경우 2020년 122만 600투그릭(한화 약 49만 원)으로, 2019년 112만 4,300투그릭(한화 약 45만 원)보다 증가함
  - 몽골의 남성 근로자들은 평균 월 132만 6,200투그릭(한화 약 53만 원), 여성 근로자들은 110만 9,600투그릭(한화 약 4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
- O 식료품 소비환경이 개선되며 소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편의점과 미니마트 등 현대적 유통채널이 성장하고 있음
    - (\*) 2020년 GS리테일은 2021년 말까지 몽골 전국에 50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Circle K와 CU는 2018년 시장에 진출해 도시 전역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O 식료품 지출비는 2020년 전체 지출 중 19.9%를 차지하였으며, 도시 지역은 22.3%, 농촌 지역은 14.3%를 전체 지출비 중 식료품 지출에 사용함
  - 목축업 발달의 영향으로 유제품과 육류의 소비 비중이 높음
    - (\*) 육류 중에서도 가금육을 제외한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등이 육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 현재까지도 육류 위주의 전통적 식문화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균형 잡힌 식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1인당 연간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11.0kg으로 주요 농식품 품목 중 가장 높은 소비 수준
    - (\*) 뒤이어 밀 가공품 및 베이커리 제품이 1인당 소비량 10.3kg로 집계, 육류 및 육가공품 9.0kg, 달걀 등 난류 6.1개, 감자 2.7kg 규모로 소비가 이루어짐





### < 몽골 1인당 연간 농식품 소비량(2016~2020) >

(단위: kg, %)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  증감률
우유 및 유제품	11.1	10.9	10.0	11.0	11.0	0.0
밀 가공품 및 베이커리 제품	10.2	10.2	10.1	10.1	10.3	2.0
육류 및 육가공품	8.7	8.6	8.9	8.5	9.0	5.9
달걀 등 난류(개)	3.9	4.4	4.5	5.2	6.1	17.3
감자	2.8	2.7	2.6	2.6	2.7	3.8
채소류	1.9	1.9	1.9	2.1	2.2	4.8
쌀	1.8	1.8	1.8	1.9	1.9	0.0
설탕 및 당류	0.7	0.8	1.1	1.1	1.2	9.1
과일류	0.6	0.6	0.6	0.6	0.6	0.0
식물성 유지류	0.5	0.5	0.4	0.5	0.5	0.0

출처 : 몽골통계정보시스템(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2) 수출입현황

##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7,132만 3,000달러(한화 약 814억 원)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94.0%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음
    - (\*) 對중국 수출액은 6,704만 4,000달러(한화 약 765억 원)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뒤이어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액은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2.9% 증가
    - (\*)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60만 달러(한화 약 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수출액의 0.8% 비중 차지
    -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58만 6,000달러(한화 약 7억 원)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0.8% 비중 차지



## <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78	2016	2017	2010	2010	2020	비중	· · · · · · · · · · · · · · · · · · ·	감률
	구분	2010	2017	2018	2019	2020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2,665	25,045	92,460	62,558	71,323	100.0	14.0	54.0
1	중국	8,775	16,591	87,287	57,154	67,044	94.0	17.3	66.3
2	리미메웨	675	2,485	226	820	1,500	2.1	82.9	22.1
3	일본	214	108	449	669	600	0.8	△10.3	29.4
4	한국	368	583	673	533	586	0.8	9.9	12.3
5	캄보디아	-	1,005	874	2,365	413	0.6	△82.5	-
6	러시아	399	956	1,383	562	399	0.6	△29.0	0.0
7	미국	22	58	47	64	271	0.4	323.4	87.3
8	대만	18	31	75	158	162	0.2	2.5	73.2
9	카자흐스탄	149	816	186	32	137	0.2	328.1	△2.1
10	네덜란드	_	-	-	_	65	0.1	0.0	-

출처 : ITC Trade Map

- 2020년 주요 수출 품목 중 기타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9% 증가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액 비중 1위를 기록함
  - (\*) 기타 육류 조제품 수출액은 4,590만 9,000달러(한화 약 524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64.4% 비중을 차지함
  - (\*) 소로 만든 기타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1,289만 4,000달러(한화 약 147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7.9%로 크게 감소함
  - (\*) 밀기울 등의 수출액은 286만 5,000달러(한화 약 33억 원)로 전년 대비 18.4% 감소함
  - (\*) 이 외에도 기타 조제 식료품(4.0%), 균질하게 조제된 고기(2.0%), 염장 또는 염수 건조한 훈제 소고기(0.6%) 등이 수출 상위 10위 내 품목에 해당함



## <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비중	증감	<b>살률</b>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2,665	25,045	92,460	62,558	71,323	100.0	14.0	54.0
1	기타 육류 조제품	111	1,797	46,286	25,379	45,909	64.4	80.9	-
2	기타 육류 조제품 중 소로 만든 것	1,309	4,257	28,678	24,737	12,894	18.1	△47.9	77.2
3	밀기울, 찌꺼기 및 기타 밀의 잔류물	2,476	3,083	4,657	3,511	2,865	4.0	△18.4	3.7
4	기타 조제 식료품	305	1,856	2,219	1,653	2,828	4.0	71.1	74.5
5	균질하게 조제된 고기(영유아 및 식이요법용)	128	2,446	4,073	194	1,440	2.0	642.3	83.1
6	훈제 소고기(염장 또는 염수 건조)	87	197	121	153	394	0.6	157.5	45.9
7	기타 수프와 브로드	301	336	296	399	368	0.5	△7.8	5.2
8	포도주를 증류한 증류주	0	0	1	0	362	0.5	-	-
9	보드카	142	65	136	242	325	0.5	34.3	23.0
10	기타 동물성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	55	178	254	495	292	0.4	△41.0	51.8

주1: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ITC Trade Map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5억 4,585만 2,000달러(한화 약 6,229억 원)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며, 주로 러시아, 중국, 한국에서 수입함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1억 7,186만 8,000달러(한화 약 1,961억 원)로 전체 31.5% 비중을 차지
    - (\*) 중국산 수입액은 8,361만 3,000달러(한화 약 954억 원)로 전년 대비 4.1% 감소
    - (\*) 뒤이어 한국산 수입액은 5,197만 7,000달러(한화 약 593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여, 수입 상위 3위에 위치
    - (\*) 이 외에도 독일(4.7%), 폴란드(4.0%) 순으로 집계됨





## <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증감률	
	←	2010	2017	2016	2019	2020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7,280	463,034	536,006	541,623	545,852	100.0	0.8	7.6
1	러시아	120,979	135,487	148,005	143,849	171,868	31.5	19.5	9.2
2	중국	60,271	69,944	86,139	87,222	83,613	15.3	△4.1	8.5
3	한국	31,100	33,183	36,008	46,881	51,977	9.5	10.9	13.7
4	독일	19,443	21,276	25,576	25,240	25,419	4.7	0.7	6.9
5	폴란드	17,706	21,148	25,448	23,076	21,948	4.0	△4.9	5.5
6	베트남	10,494	9,807	13,449	17,659	17,509	3.2	△0.8	13.7
7	미국	8,144	12,046	16,954	17,318	14,308	2.6	△17.4	15.1
8	카자흐스탄	28,090	31,467	30,668	27,361	14,076	2.6	△48.6	△15.9
9	우크라이나	21,463	18,588	19,806	14,881	13,701	2.5	△7.9	△10.6
10	태국	11,061	11,002	13,360	15,136	13,239	2.4	△12.5	4.6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타 조제 식료품 및 당류, 유지류 등이 확인됨
  - (\*)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6,167만 3,000달러(한화 약 524억 원)로 집계
  - (\*)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102만 3,000달러(한화 약 147억 원), 정미 수입액은 2,831만 3,000달러(한화 약 33억 원)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여 3위 기록
  - (\*) 이 밖에도 기타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4.6%), 그 밖의 파스타(3.5%), 기타 설탕과자(3.4%), 스위트 비스킷(2.9%) 순으로 수입액 비중을 보임



## <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22/2					비중	증감	<b>남률</b>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7,280	463,034	536,006	541,623	545,852	100.0	0.8	7.6
1	기타 조제 식료품	32,868	45,606	60,035	58,637	61,673	11.3	5.2	17.0
2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 한 조제 식료품	23,881	27,387	31,567	31,982	31,023	5.7	△3.0	6.8
3	정미	13,426	17,859	22,252	22,196	28,313	5.2	27.6	20.5
4	기타 사탕수수 당이나 사탕무 당,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26,340	26,529	31,450	23,018	25,003	4.6	8.6	△1.3
5	그 밖의 파스타 (속을 채운 것 제외)	11,856	14,389	18,537	20,137	19,022	3.5	△5.5	12.5
6	기타 설탕과자 (코코아 함유한 것 제외)	20,065	22,395	21,160	22,140	18,722	3.4	△15.4	△1.7
7	스위트 비스킷	13,340	13,832	15,089	16,386	16,068	2.9	△1.9	4.8
8	해바라기씨유· 잇꽃유·목화씨 유와 그 분획물	10,587	11,641	12,799	10,894	15,876	2.9	45.7	10.7
9	비 알코올성 음 료(식수, 과채 주스, 우유 및 맥주 제외)	-	13,290	14,631	17,346	15,297	2.8	△11.8	-
10	고체 형태 우유 및 크림(지방 함량 1.5% 초과)	6,416	11,518	11,123	13,302	12,628	2.3	△5.1	18.4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ITC Trade Map





## □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

- O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몽골 수출액은 6,623만 5,100달러(한화 약 756억 원)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6.1%로 성장
  - 라면(6.6%),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6.0%), 소스류(4.4%), 기타 조제품(2.8%), 과실주스 음료(2.5%) 등 가공식품이 상위에 위치함
    - (\*) 라면 수출액은 437만 9,400달러(한화 약 50억 원)로 전년 대비 1.6% 감소
    -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2017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하며 2020년 수출액은 399만 5,100달러(한화 약 46억 원)로 집계
    - (\*) 뒤이어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 수출액은 294만 3,100달러(한화 약 34억 원)로 전년 대비 20.2% 증가
    - (\*) 기타 조제품과 과실주스 음료는 각각 182만 3,200달러(한화 약 21억 원), 166만 900달러(한화 약 19억 원)로 집계

### < 한국의 對몽골 수출 규모(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78	2016	2017	2010	2010	2020	증감	불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6,419.7	41,986.4	50,219.2	56,688.3	66,235.1	16.8	16.1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 한국의 對몽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6~2020)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6 2017		2019	2020	비중	증감률	
	<b>丁正</b>	2010	2011	2018	2019	2020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6,419.7	41,986.4	50,219.2	56,688.3	66,235.1	100.0	16.8	16.1
1	라면 -	2,512.9	2,512.9	3,559.4	4,451.2	4,379.4	6.6	△1.6	14.9
2	7타 알코올을 함하지 않는 음료	0.0	3,285.2	4,020.7	4,331.6	3,995.1	6.0	△7.8	6.7
3	소, 소 제28 조제품	1,432.9	1,900.1	2,479.1	2,448.4	2,943.1	4.4	20.2	19.7
4	기타 조제품 기타 조제품	393.9	243.5	645.6	1,257.1	1,823.2	2.8	45.0	46.7
5	<b>괟</b> 전 음료	0.0	793.8	1,249.3	1,402.1	1,660.9	2.5	18.5	27.9

주1: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주2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과실주스 음료의 경우 2017~2020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산출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3) 통관 및 검역 제도

## □ 통관제도

- O 몽골 관세청에서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몽골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서류검사 → ③제품 검사 및 검역 → ④관세납입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 O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 수출입 업무 가능, 수입 식품은 자체 식품검수,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수입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한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유기농 · 농축산물 ·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 (\*) 동식물성 식품과 원재료를 수입자가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이름,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검수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함
  - 식품 수입 시 하기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 (\*)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 물품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 및 부과됨
    - (\*) 라이선스 : 몽골 정부가 규정한 자국산 전략품목 중 분유, 우유, 육가공식품(소· 말·낙타·염소·양), 밀가루, 생수 수출입 시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는 몽골 상공회의소에서, 품질 증명서는 표준 측정원에서, 건강 우생 증명서는 전문 검수원에서 각각 발급하며, 실험실 검사의 경우, 축산업 제품은 국가가축병원위생중앙연구원, 기타 농축산물 및 식품은 식품위생 국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필수)
- 건강위생증명서
- 검사결과서

- 수입 후 제품 보관할 창고 증명서
- 법률에 지정된 라이선스

#### ○ 통관 시 유통기한

- 식품에는 제조일자와 보존기간 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포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통관 시 최대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원칙임.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상품은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
- 보존 유통기한이 1년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하며, 보존 유통기한이 6개월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2개월이어야 함



- 몽골은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주류의 경우 수입 허가품목에 해당되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 가능
- 몽골은 식량안보 및 전략물자 취급에 까다롭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확인 필요
  - 기존에는 우유 및 분유, 육류, 밀가루 등의 식품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규제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몽골 정부는 주요 식품의 가격, 조달 및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 허용을 결정함
    - (\*) 밀, 쌀, 설탕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곡류 등 전략 식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기로 조정함
- 수입통관 전 화물에 대한 내용을 몽골 관세청에 신고
  - 몽골의 수입통관 시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CDF)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 제반서류는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국제 가축병원 증명서, 포장정보, 관세납부증명서임
  - 사전수입신고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혹은 세관에서 정밀 검사하기 전에 각각 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물품 수령 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 수입신고한 서류 내용을 토대로 통관 서류 검사를 실시
  - 몽골 수출의 경우 통관허가 및 서류제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보다 높은 편임. 수입을 위해 12개의 서류가 요구되고, 115시간이 소요됨
  - 필요에 따라 외국거래 계약서, 송장, 운송 관련 문서, 포장내역, 원산지 증명서, 권한당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등을 몽골어 작성본 또는 번역본으로 제출함
  -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청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평가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를 부과함
- O 몽골 관세청 명령으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함
  - 검역문제는 전문 검역청의 국경검역부서가 담당함. 표준측정청이 표준기준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표준에 적합 여부 판단은 전문 검역청이 모니터링함. 몽골의 경우 2018년에 개정한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이 몽골국경 진입 시의 검역 통제, 검사에 관한" 법으로 규제함
  - 몽골은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판매, 사용 이전의 검역을 의무로 함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국경순찰대, 식물검역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표준품질인증서(Standard and Quality Cer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에 한해 허가증을 발부함
- 식품을 수입할 경우 ISO인증서, 제품 리스트, 가격 리스트, 결제조건(선결제 /후결제) 정보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의 통관 검역 기관은 서류가 완벽할 경우 보통 1주일 이내로 통관이 가능함
- O 서류 및 물품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을 납부
  - 몽골은 대외무역에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낮은 편임
  - 수입품의 경우 특별세 부과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세율은 대략 5% 정도이나 유제품, 꿀, 감자, 배추, 순무 등 일부 야채와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 수입품에 부가가치세(VAT)는 세금 부과 금액의 10%로 함.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에 관세와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정함
    - (\*) 특별세 대상 품목 : 술, 와인, 담배, 맥주 등을 포함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됨. 몽골 측이 우리에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수산물(03류) 및 수산물 조제품(16류) 113개 품목, 과실·견과류 (08류)와 커피·향신료(09류)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됨

#### < 몽골의 APTA협정 양허표 요약(농식품 해당 품목) >

(단위 : %)

번호	HS코드 대분류	해설	품목 수	기본 관세율	협정세율
1	03류	어패류	102개 품목 (1-102)	5	3.5-4
2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개 품목 (103)	5	4
3	07류	식용 채소류	7개 품목 (104-110)	5	4
4	08류	과실 • 견과류	13개 품목 (111-123)	5	4
5	09류	커피 • 향신료	10개 품목 (124-133)	5	4
6	10류	곡물	3개 품목 (134-136)	5	4
7	12류	채유용 종자 • 인삼	7개 품목 (137-143)	5	4-4.5
8	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3개 품목 (144-146)	5	4
9	16류	육ㆍ어류 조제품	11개 품목 (147-157)	5	3.5-4.5
10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3개 품목 (158-160)	5	4.5
11	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0개 품목 (161-170)	5	4-4.5
12	20류	채소ㆍ과실의 조제품	3개 품목 (171-173)	5	4.5
13	23류	음료 • 주류 • 식초	1개 품목 (174)	5	4.5

출처 : TradeNavi



- 관세를 납부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
  - 몽골 수출의 경우 통관 허가 및 서류 제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보다 높음

### □ 검역제도

- O 제품의 위험도가 낮을 경우 서류 심사로 통관을 진행하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는 서류, 검수, 시험검사를 3개월마다 수행함
  - 제품의 위험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국경 및 세관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함
    - (\*) 검수는 검역의 초기 검수로 제품이 파손 및 변질, 오염, 품질, 안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구분	위험도 기준	분류
1	<ul> <li>사람 및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li> <li>몽골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이나 해충, 독성 식물 등이 확산되어</li> <li>몽골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li> <li>자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li> </ul>	높음
2	<ul> <li>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li> <li>자연환경 및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li> <li>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li> </ul>	중간
3	• 사람 및 동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없음	낮음

- O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은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포유류, 애완 및 야생동물, 파충류, 수생동물, 새, 벌, 그것들의 새끼나 배아, 살아있는 알
- •고기, 우유, 부속 고기, 지방, 계란, 가죽, 뼈, 모피, 울, 캐시매어, 털, 내장, 뿔, 발굽, 새의 깃털, 오리털, 발톱, 가축의 생식기, 쓸개, 샘 등 동물성 원재료, 제품
- 자연 작물이나 재배된 뿌리채소, 열매채소 등, 나무, 그것의 씨앗, 묘목, 부위
- 곡물. 감자. 채소. 잎. 사료. 원두. 경공업 및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식물성 기타 원재료. 건조된 식물, 수집, 목재, 그것의 일부, 각종 과일, 밀가루, 설탕, 양념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
- 혈 및 혈청, 혈장
- 사냥한 동물
- 각종 병을 유발하는 벌레나 곤충, 미생물 배양,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생물
- 동물 사체, 분뇨, 병을 유발하는 물질
- · 흙, 청동, 돌
- •차량, 컨테이너, 포장용 스티로폼 및 완충재, 깔개, 동물의 털로 가공한 펠트, 가축의 사육 물품, 건축 부자재(줄, 끈 등)



- 동물, 식물, 원자재,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물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 검역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가전문검역청에 제출해야 함
- 동물, 식물, 제품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
- 동물, 식물, 제품을 운송할 운송수단 종류, 차종, 도로 경로
- 해당 국경 지역, 기간
- 원자재, 제품 수량, 가공상태(반가공, 원재료, 냉동, 신선 등), 포장, 상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 對몽골로 수출가능한 한국 신선 및 건조 농산물은 8개 품목 80개 종이며, 신선 및 건조 농산물 중 금지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 (1) 수출 가능 품목

## □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돈육 및 돈지방

## □ 협상없이 수출가능 품목

- O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신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
  -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O 축산물

-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만두, 치킨 너겟 등), 유제품

## (2) 수출 불가능 품목

O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 < 인터뷰 업체 정보 >

업체명	ENZACTA MONGOLIA (몽골)
업체 유형	한국 신선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Zolboo (manager)

- 자사는 한국에서 사과, 귤, 한라봉, 딸기, 수박, 애호박,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고구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사과와 귤임
- 몽골은 현지산 농산물 보호를 위해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매우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때도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수입시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음
- 몽골에서는 한국산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수입하고 있으며 검역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특별히 수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음. 하지만 세관원에 따라 수입 절차가 매우 쉬워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함



## 3 비관세 장벽 현황

## (1) SPS

## □ 주요 SPS 내용

O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식품규격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음

##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 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 =STAN&menu_grep=MENU_NEW04&menu_ no=2926	

## □ 통보문 개정 현황(2021년)

- 없음

## (2) TBT

## □ 주요 TBT 내용

- 1999년 개정된 몽골 식품법의 9조 2.6항에 라벨링 규정 명시
  - 몽골 식품법에서 식품은 위생・품질 조건에 맞는 유의사항, 저장 조건 및 기간, 이용 방법,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몽골 관세청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은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몽골 등록 법인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O 식품인증제도

- 육류, 식품, 유제품, 밀가루, 음료, 주류, 담배 등의 수입품은 ISO 및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취득해야 함. 또한 몽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MNS 인증 취득이 의무 사항임



- O 알코올 음료 유통 관리 및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안
  - 본 법안의 목적은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출입, 재수출, 판매, 서비스 및 소비와 관련된 관계를 규제하고 알코올 중독을 예방 퇴치하는 데 있음
- 육류 및 육류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안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인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모든 표준은 자발적으로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 운송, 보관, 국내외 판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해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법인, 관할당국 및 공무원에게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소, 말, 양, 염소, 돼지 및 가금류의 생산 및 판매에 적용함
  - 제2조 제5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기관의 특정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기타 동물들의 육에도 적용함
  - 외국에서 몽골로 수입된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수의 위생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함
  - 시민에 의한 동물 도축 및 해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규정	몽골 식품법 1999	http://extwprlegs1.fao.org/docs/pdf/mon42 182.pdf	
MNS 표준	몽골표준계량원	https://estandard.gov.mn/	



##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li>제품명</li><li>원료</li><li>중량</li><li>제조사 및 수입업체</li></ul>		• 원산지 •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 유통기한 • 사용 설명	· 열량 · 영양성분 · 임산부 및 어린이 사용 관련 표시			
	표기 언어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					
	제품명	제품의 명	제품의 명칭				
	원료	원료 목록					
	중량	순중량, 총중량 기타 수치적 지표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명칭 및 주소					
라벨 표기사항	원산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					
(가이드)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제품을 제조 또는 포장한 날짜					
	유통기한	유통기한 및 저장 조건					
	사용 설명	제품 사용 또는 섭취 방법					
	열량	열량 정보					
	영양성분	영양성분과 함량 단위 표기					
	기타	주의사항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 ○ 소스류

## 라벨링 사진 ) 🔤 🛚 🖎 🖰 021 07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CJ 백설 닭볶음탕양념 290G / Тахиан мах амтлагч 290гр 제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найрлагыг үзээд өөрт 주의사항 харшлах орц байгаа эсэхийг шалгаж хэрэглэнэ үү. 닭고기와 볶아서 사용한다. 사용방법 Тахианы махтай хамт хуурч хэрэглэнэ. 제조일로 부터 18개월 Үйлдвэрлэснээс хойш 18 са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Нарны гэрлээс 유통기하 хол сэрүүн хуурай нөхцөлд хадгална. 공식대리점 I&R MONGOLIA LLC "Ай энд Эр Монголиа" ХХК 대한민국, "CJ" 그룹, БНСУлс, "CJ" корпораци 제조사명 및 소재지 원산지 South Korea 한국 133.9 kcal 칼로리/Илчлэг 탄수화물/Hyypa ya 26.6 g 설탕/Caxap 9.4 g 단백질/Уураг 4.4 g 영양정보 지방/Өөх тос 1.1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0.6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0 mg 나트륨/Натри 2425.4 mg



### ○ 유제품



## □ 인증

### [필수 인증]

#### O MNS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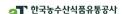
- 몽골은 1998년부터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MNS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몽골표준계량원(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에서 MNS 인증을 발급함. MNS 인증은 모든 수입품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아님. 그러나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2005년 제정된 '규격화 적합평가에 대한 추가 규정 127호'에 따라 ISO나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MNS 인증을 받아야 함

장	조	열	국가코드	상품명	
02				고기, 식품	
04	04.02			설탕 및 기타 양념에 들어가는 원액 우유	
	04.03	0403.10.	00	요구르트	
	04.05			버터, 우유 기름, 진한 버터	
	04.06			치즈, curds from sour milk	
05	05.04			가축, 동물의(생선 외) 내장	
09	09.01			로스티드커피 및 원두커피, 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커피	
	09.02			맛, 향이 첨가된 차, 첨가되지 않은 차(ferment, no ferment tea)	
11	11.01	1101.00		밀, 호밀	
	11.02	1101.00		밀, 호밀 외 기타 밀가루	
	11.04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곡물	
15				가축, 동물 및 식물유	
16	16.01			고기, 보조 고기 및 혈액 등 영양식품	
	16.02			고기, 보조 고기 및 기타 식품, 캔 식품	
	16.04			생선 캔, 생선 알 등의 식품	
17				설탕, 설탕 식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밀가루 식품	
21				기타 여러 가지 식품	
22				물, 음료, 알코올, 술, 와인, 간장	
24				담배, 담배 대체재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



• 인증명	· MNS 인증
● 인증기관	· 몽골표준계량원 (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현지 수입업체 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상품 매매계약서, 제품수량 및 가격, 제품에 대해 수행된 공인 실험실 테스트 결과,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필요 시),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



## 4 수출 애로사항

No.			해당국가	몽골	
	제목	높은 물류 비용으로 인한 부담	관련품목	건강기능 식품	
1			유형*	기타	
· 몽골은 항구가 없는 내륙 국가로, 인접국가로 해상 운송을 거친 및 육로를 통해 주로 물류가 이루어짐. 한국은 주로 중국과 리통해 수출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는 특정 전문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물류 업체에 따라 운송비 견적이 다르게 발생함  · 2020년 기준 냉장·냉동 컨테이너 비용은 약 7,000달러로 컨테이너보다 운송비용이 2배 정도 높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운송비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구체적인 운송비는 물류업체와 진행 시점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			중국과 러시아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00달러로 일반 변동하고 있으므로		
	• 건의 ·항	· 당사는 건강기능 식품을 몽골로 수출하고자 함 · 최근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No.	제목	현지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해당국가 관련품목	몽골 신선식품
2	제속	선시 마이어 결물의 어더움	유형*	기타
주내	-요  용	<ul> <li>몽골 기업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서칭하는 것은 쉽지 않음</li> <li>몽골 인구의 60%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직접 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li> </ul>		집중되어 있으므로
애로·건의 사항 현지에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바이어 발굴 자체가 제대로 어려움		수출하고 싶지만, 제대로 진행되기		
기	타	(-)		

No.			해당국가	몽골
	제목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수	관련품목	식품전반
3			유형*	수입통관
주 내		<ul> <li>몽골 수입 통관 절차</li> <li>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li> <li>→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li> <li>몽골에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12가지로 무역계약서, 상업 송장, 선하증권, 환어음 내역서, 원산지 증명서, 관세 납부 확인서, 과세 표준 증명서, 수입 신고서등이 요구됨</li> <li>수입 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li> </ul>		
애로·건의 사항 - 당사는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몽골에서 수입식품 통관 진행 수입 세관원에 따라 수입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고, 한국산 식품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에 어려움이 있음				
※몽골 세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방 조치로, 코로나가 발병 기타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장 경고함			·	



## 5 현지화 자문보고서

## (1) 농산물 및 신선가공식품

##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제품 수출 시 관세율은?
- 몽골 현지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 및 절차는?
- 식품 위생 기준은?

##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 관세율

- 1999년 6월 3일 몽골 국회 29호령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확정되었고. 이후 12번에 걸친 추가 변경으로 초기에는 관세율이 5%로 동일하였으나, 지금은 품목에 따라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수출 시 품목 확인 필요
- 몽골 현지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회사) 설립 시 구비 서류
  - 투자자가 외국 회사(법인)일 경우
    - (\*) 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회사 정관
    - (\*) 한국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문 국제공증본(아포스티유)
    - (\*) 한국 회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 몽골 현지회사의 대표가 될 사람의 여권 사본, 이력서, 증명사진
    - (\*) 몽골에 설립될 회사의 정관
    - (\*) 몽골에 설립될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 회사 이름(몽골 등록청에서 허가받은 이름)
    - (\*) 개설된 회사 계좌에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은행 확인서
    - (\*) 위임장(설립 절차 위탁 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국제공증본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 (\*) 회사 이름(몽골 등록청에서 허가받은 이름)
    - (\*) 회사 정관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 비즈니스 계획(마스터 플랜)
    - (\*) 개설된 회사 계좌에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은행 확인서, 현물일 경우 세관신고서
    - (\*) 투자자의 여권 사본, 이력서, 증명사진





신남방

중동

○ 몽골 현지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회사) 설립 절차

아시아

- 국가 등록청에서 상호명 취득
  - (\*) 중복되는 이름이 많으니 상호명을 3~4가지 생각하여 가져갈 것
- 상호명 수령 후 몽골에 있는 임의의 상업 은행에 가서 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 자본금을 입금
  - (\*) 한국에서 몽골에 있는 회사 계좌로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을 송금(최저 미화 10만 달러)
  - (\*) 투자자 1인당 최저 자본금이 미화 10만 달러이므로, 2인이면 20만 달러, 3인이면 30만 달러를 입금해야 함
- 상기 구비 서류 및 회사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 입금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가 등록청에 접수한 후 2주 뒤 등기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 (\*)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법인 직인을 신청하여 발급
  - (\*) 직인이 나오면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
  - (\*) 법인 계좌에 예치된 자금 인출 가능

## O 식품 위생 기준

- 2012년 12월 2일 [식품법], [식품안전법]이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개인이 수화물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던 라면, 김치, 농축산 식품 등은 반드시 몽골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만이 수입,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식품법 제11.1항 참조)
- [식품안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몽골에서 식품판매를 위해서는
  - (\*) ①식품판매자의 상호명, 위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②사업자등록증 번호, 신분증 번호, 식품의 종류, 형태, 내부규례 등의 정보를 서면이나 전자형태로 해당 지역에 있는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함(동법 제6.1항)
  - (\*) 감독기관은 식품판매자가 제출한 정보를 접수한 후에 30일 이내에 [식품법] 및 [식품안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하여 평가서를 발급함
  - (\*) 감독기관 평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는 식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